

한국특허제도와 발명장려운동(1)

이 글은 1988년 특허청에서 발간한 한국특허제도사중의 한부분으로서 88년도에 나온 글을 뒤늦게 게재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게재연도가 틀리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뀔리 없다는 생각과 특허출원 20만건 돌파라는 신기원을 세운 우리 특허도양에서 뿌리는 어느정도 튼튼히 박혀있는지, 발명장려를 위한 운동은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효과는 어느정도였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한국특허제도의 여명과 발명장려운동을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국특허제도의 여명기

서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특허 제도를 실시하였던 나라는 베네치아 공화국이라고 한다. 베네치아는 1474년에 그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발명한 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년간 특허권을 주기로 정하고, 발명자는 그가 발명한 기계를 독점적으로 제

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특권 부여를 조건으로 하여 1년이내에 그 발명품을 제작하도록 발명실시의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1475년에서 1550년까지 약 70년간에 100건의 발명이 있었다고 하나 이 제도가 얼마나 특매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베네치아는 중세에 독립한 이탈리아

의 북부에 있었던 도시국가였으나 1797년 나폴레옹의 점령으로 패망한 나라이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15세기경부터 있었으나 1560년경에 와서 처음으로 독점 특허장, 즉 전매특허장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무렵부터 특허장은 왕실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감용되어, 신규의 발명특허라기보다는 일용품의 영업특권으로 특허장이 남발되어 시민의 항의와 이로 인한 소송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드디어 국회 회의는 1624년에 전매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국왕이 부여하는 모든 전매권을 무효로 하였다 한다.

이 전매조례의 골자는 ①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 ② 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

건의 특허가 있으며 ③ 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는 등이다. 지금 이 1624년의 영국의 전매조례는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특허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불란서는 1699년의 왕립과학원 규정에 의하여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하며, 미국은 1790년에 연방특허법이 제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근대화의 선주자 일본은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당시 동방의 후진국 한국에서도 1880년대에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던지 또는 이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제의하는 일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조선 후기에 서울에서, 평시서관 관아에 소속되었던 수공업을 전업으로 하는 장인들에게 그들의 제품을 관청에 조달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 밖의 여가에서 그들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들의 생산을 보호하는 한편 그들의 관청에 대한 제품 조달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들 중 이업전 야장 도자장들에게 이업전 신철전 도자전 등 시전을

개설하게 하고, 자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판매권을 주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특허제도와는 다른 것이며, 또 같은 시대에, 세칭 육의전이란 시전의 상인들이 관부와 왕실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의무를 지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금란전권이란 특권으로 동종의 물품에 대한 상행위를 통제하였던 독점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지금의 특허제도는 아니다.

이런 류의 특권이 조선시대에서 관부의 물품조달을 위하여 생산 또는 상거래에서, 특정 집단에서 허용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하여 둔다.

특허제도는 한 나라의 근대적 산업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또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집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880년대의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의 의식구조나 경제상태는 전근대적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암담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일부 유학자들 사이에 종래의 유학사상에서는 벗어난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문자 그대로 실학의 학문이 싹트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실학은,

이용후생론을 제창하는 북학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실학파들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자기의 이론과 견해를 정리하여 논술하였을 뿐이지, 실제 그들의 학문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어찌하였던 이 실학사상의 맥은 조선 말기의 개화파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1882년에 지식영이라는 한 젊은 유생이 국왕에게 올린 간곡한 상소는 그것이 시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관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영은 당시 신진 엘리트로서 그는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에 대하여도 상당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며, 상소의 내용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의 수용을 제기한 문제나,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외에도, 그는 서양 의학을 도입보급하고, 189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세운 의학교의 초대교장으로서 후진양성에 진력한 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언문학연구에도 선구자 역할을 한, 우리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한없는 욕망을 가졌던 분이며,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 특허제도의 전사부분으로 생각되는 지난간 백유년의 사이에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또는 통감부와 일제시대에 걸쳐 특허제도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제1절 지식영의 시무소

우리나라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넘는 1882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고종 19년 8월 23일 지식영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지식영은 이 상소문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나의 원을 설치하여 새로운 서책과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을 구입 비치하여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재능이 있어서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하는 자에게는 전매특허권을 주도록 하고, 또 서책을 저작간행한 자에게는 출판권을 주도록 하여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그 실행방안까지를 제시하여 가며 주장하였다.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의정부에 내려 시행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상소는 특허제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를 좀 요약하여 말하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눈을 돌려 서양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선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시 개화주의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으며 또한 당면한 국가적 우선 과제였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 제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처음 있었던 이 제도의 공식논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여기에서 지식영의 이 상소가 나오게 된 1882년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형상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상소문이 나온 1882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맺은 해이다. 말하자면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맺고 그 다음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해는 임오군란이란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는 물론 청·일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부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 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일본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 때의 박영효수신사일행에는 김옥균, 서광범이 동행하여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시찰하고 돌아온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전해인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파견되고, 또한 김윤식은 영선사로 젊은 수재들로 선발된 유학생을 데리고 중국에 파견되었으니 조정에서도 밖의 세상에 눈을 돌리어 무엇인가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전해인 1880년에는 김홍집이 제이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된다. 이 때의 수신사 일행은 일본의 놀라운 근대화 작업을 목격하게 되고 또 세계정세의 동향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보여진다. 지식영은 이 때의 김홍집 수신사 일행의 일원으로 일본에 따라갔던 것이며 지식영은 여기에서 우두 두묘제조법을 배워가지고 돌아왔다. 여기에서 지식영의 천연두예상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양의학의 선구자로서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나라 개항 당시의 사정을 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조선조정은 계속 쇠국

정책을 강행하여 오다가 1876년(고종 13년)에야 비로서 일본 군함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하게 된다. 조정은 바로 그 해에 김기수를 수신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후인 1880년에 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던 것이다.

일본과 개항조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파견되었던 수신사 김기수는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변화하여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감명을 받은 바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는 당시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일동기유(日東紀遊)나 그의 언행은 신문명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런 비판과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것은 신문명과의 접촉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식한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의 김홍집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는 개화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신문명 수용에 대한 강한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다음해 1881년에는 조준영, 박정양, 어윤중, 엄세영,

심상학, 홍영식 등 12명의 위원과 통사 종인 등 총 62명으로 구성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하게 되고 이 일행은 3개월여의 기간을 가지고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군사·교육·공업등의 실상을 자세히 시찰하고 돌아왔다.

한편 청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파견하였는데 이때에 문무자제중에서 총명한 젊은이 100여명을 유학생으로 데리고 가서 북경 천진등에서 신식무기의 제조법과 조련법 또는 전신 전화등 통신기술등을 배우게 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완고한 유생들의 개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정세에 대처하려는 정부는 개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해 12월에 정부기구의 개혁에 착수하여 청의 제도를 참작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그 밑에 사대 교린 통상 기계 군물 선함 등 12가를 두어 각기 해당사무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행정기구의 구상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이 시

대의 젊은이 지식영의 인물에 대하여 좀 언급하고자 한다.

지석영은 1880년 당시 26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그 전해에 우리나라 전역에 천연두가 창궐하여 서울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참상을 보면서 천연두에 대하여 한의학이 너무도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런던 중 마침 그는 개항한 부산에 일본거유민을 위한 서양식 일본병원이 있고 그곳에는 서양병원을 배운 일본인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꼭 한번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1879년 10월 도보로 서울을 출발하여 20여일만에 부산에 도착하여 제생의원이란 일본인 병원을 찾아갔다. 지석영은 여기에서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편찬하는 조일회화사전의 한국어의 오자를 바로잡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2개월간 서양 종두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곳에서 두묘약과 종두법 그리고 접종기구등을 얻어가지고 다시 주보로 상경하게 되는데 그는 그 도중서 충주 덕산면의 처가에 들르게 된다. 그는 우선 여기에서 장인을 설득하여 어린

처남에게 종두를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에 자신을 얻어 그는 이 마을 어린이 40여 명에게 종두를 실시하여 또한 성공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우두의 접종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1880년 1월에 상경한 그는 우선 종두를 이해하는 집안의 어린이에게 종두를 접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종두를 접종하기 위해서는 두묘의 제조가 절실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제생의원에서도 두묘(痘苗) 제조는 하지 못하였다. 전국에 종두를 보급하기 위하여는 두묘를 국내에서 생산해야만 하였는데 그러나 별 묘책이 없었다. 사실 지식영은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한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다. 그런데 마침내 지식영에게 두묘(痘苗) 제조법을 배울 기회가 왔다. 그는 1880년 7월 수신사 김홍집이 도입하는 그 일행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가게 된 것이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는 1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일본내무성위생국 우두종계소에서 우두묘의 제조법 채두가수장법(採痘痂收藏法), 독우사양법(犢牛飼養法), 채장

법(採漿法)등을 완전히 습득하게 되었다. 일본인 의사들도 그의 열의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는 한편 수신사 일행의 일원인 지식영은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짝 앞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문물에 접하게 된 일본이 지금 이룩한 이 무서운 발전상은 우리 경우와 비교하여 실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우리도 언젠가 지나 울타리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귀와 눈을 세계로 돌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국가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지식영만의 생각은 아니고 개화를 지향하는 많은 선구자들의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희망찬 부푼 꿈이었다.

지식영은 귀국하여 바로 서울에 종두장을 차리고 스스로 종묘(痘苗)를 제조하는 한편 시민을 계몽하면서 우두접종사업에 몰두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1882년 7월 임오군란을 치른 후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 과정에서 단연 개화파에 가담하여 1882년 8년 23일 개화정책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시무소(時務疏)를 올렸다. 이 상소의 내용은 앞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개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과학기술연구원같은 것을 설치하여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고안한 자에게는 전매권을 주어 의욕을 고취시키며 새 서책을 짓거나 간행한 자에게도 출판권을 주어, 이렇게 과학기술을 장려하여 나간다면 새로운 실용의 학문이 일어나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근대적 공업소유권제도의 제창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영의 상소에서 거론된 특허제도가 그후 한 제도로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정부가 상소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교육을 실행에 옮기고 또 특허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정정은 그리할만한 안정된 것이 못되었다. 다시말하면 국가경영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만한 정부형편이 아니었다. 이때의 정국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며 갈수록 정국은 갈피를 못잡고 혼미를 거듭하

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1910년 경술년을 맞게 된다. 지식영 상소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이 설혹 특허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할지라도 지식영을 위시한 신진개화파들이 나라의 근대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정신의 근대화화 서양의 기계문명에 의한 근대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또한 초조하였던가를 우리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제2절 농상위문 장려국

구한말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숨가쁜 격동의 시기였던 지식영 상소의 1882년에서 1910년까지 약 28년간의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에 관한 흔적을 찾아보고자 많은 자료를 접하였지만 이것이 특허제도였다고 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그 몇가지 자료중에서 1894년의 갑오개혁 당시 정부 관리 개편에서 6조가 폐지되고 새로 개편된 중앙정부조직에서 의정부 아래 내무아문(內務衙門), 외무아문(外務衙門), 도지아문(度支衙門) 등 8개 아문(衙門) 중에 농상아문(農商衙門)이 있었고 농상아문(農商衙門) 아래의 총무

국(總務局), 농상국(農桑局)상 공부(商工局) 등 8개국중에는 장려국(獎勵局)이 있었다. 이 장려국의 분장사무(分掌事務)를 살펴보면 「식산(殖産)의 장려 흥업 및 전매특허의 사무를 관상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분장사무의 내용은 분명히 특허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기구조직의 내용에 특허제도의 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 이것을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특허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구가 언제까지 존속하였는지 또는 이 제도에 대한 일반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특허제도가 한 제도로서 정착되는 데에는 그 나라의 근대적 산업의 진전의 정도와 또는 그나라 과학기술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놓이는 것이라고 생각할적에 당시의 우리 산업과 기술의 일반적 수준이 아직 이 특허제도를 존속시킬만한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선각자들은 지식영 이후에도 우리 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나

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간단 없이 주장하였던 것 같다. 1899년 6월 3일 황성신문에는 한국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같은 신문 1900년 1월 15일자 사설에서는 충주에 사는 이태호라는 분의 직조기 신발명을 격찬하면서 후래자를 격려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전매특허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903년 1월 16일자 황성신문에는 농상공부소관 박람회임시사무소에서 서울 시내 오서 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모집하고 우수제작자에게 시상하고 특허권을 부여하였다는 기사가 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출품된 제품들을 일본 대판의 박람회에 출품하여 판매토록 일본 삼정회사(三井會社)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특허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농상아문 장려국의 특허취급사무부서가 다시 이때에 와서 부활하였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 부서가 존속하였다는 말인지에 대하여는 알 길이 없다. 같은 1903년 당시, 2월 14일 고종실록에는 농상공부 임시박람회 사무소 인사발령에 주사 2인과 위원 4인의 발령사항이 있으며, 2월 22일에는 임시박람회 경직 발령으로 의정부찬정 농상공부 대신 민종묵(閔種默)을 총무관으로 발령을 내고 광산국장(鑛山局長)을 임시위원으로 제청한 기록이 있다. 또 같은해 7월 20일 고종실록에도 농상공부령 제 41호로 임시박람회 진열관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임시박람회를 열었다는 말이 없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박람회가 열렸다는 기록을 찾지 못한다. 특허제도와 박람회와는 직접관계는 없다하더라도 박람회는 산업기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장려한다는 뜻이 있으니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농상공부의 명칭은 갑오개혁 당시의 농상아문(農商衙門)과 공무아문(工務衙門)을 그 다음해인 1895년 을미개혁때 이 두 아문(衙門)을 합쳐서 농상공부로 개편된 것임을 말하여 둔다.

그런데 1907년에 와서 한가지 농상공부 조직상의 사무분장(事務分掌)에 눈에 띄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주목되는 바는 이해 12월 18일의 농상공부직조개편(農商工部職制改編)의 내용이다. 농상공부에는 5개의 국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의 상공국소관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상표 및 의장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상공국의 소관사무는 이외에도 5가지 사항의 사무가 있는데 발명특허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상표와 의장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면서 발명특허에 관한 사무가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쯤 되어서도 시간적으로 발명특허 사무를 취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인지는 모르겠다.

이 특허제도가 하나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라고 볼 때 민원이란 국민각자가 직접 자기필요욕구에 관을 찾고 필요한 사항의 특혜를 받을 것을 전제한 것이라면 이러한 민원 사항이 상당량에 도달할 때 그 업무부서의 존재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개화 초기부터 지식영을 위시해서 개화를 지향하는 정부관료들 가운데에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거론도 해오고 때로는 갑오개혁당시와 같이 제도의 제도로서 담당부서를 설치도 하였지만 특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국민들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었던가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과 직접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국가적 상황이나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발명특허에 흥미를 끝만한 환경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허제도가 근대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공업적 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지만 이 기간의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 만한 바탕이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음에는 구한국말기에 한국특허령이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발특9601